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22133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12.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4.10.21.

coffeebean.com

The Coffee Bean & Tea Leaf 정보 공개서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Unit 14, Gray Office Park, Galway Retail Park, Headford Road, Galway, Ireland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영업표지		주 소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SMCC")	The Coffee Bean & Tea Leaf®		Unit 14, Gray Office Park, Galway Retail Park, Headford Road, Galway, Ireland		
	설립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19.8.22	2020.10.23	Neil Squires	061-363824	해당 없음
	법인등록번호	해당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없음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법인등록번호	해당없음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텔라웨어에 설립된 CBTL Franchising, LLC(이하 "CBTL Franchising")는 INTERNATIONAL COFFEE & TEA, LLC(이하 "ICT")의 완전자회사이며, ICT는 전세계적으로 "The Coffee Bean & Tea Leaf" 소매점을 위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 1일 SMCC는 ICT 및 CBTL과 양도계약(Assignment and Assump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서 ICT는 ICT의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 자격 및 이익을 SMCC에 양도하였고, ICT와 CBTL Franchising은 ICT와 CBTL Franchising이 당사자인 특정 가맹

계약 및 재가맹계약들에 관한 권리, 자격 및 이익을 SMCC 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MCC 는 2019년부터 전세계적으로 "The Coffee Bean & Tea Leaf"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CBTL 이 일정한 이행 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 등록된 가맹본부 자격을 유지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현재는 SMCC 가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The Coffee Bean & Tea Leaf®	2019년 10월 1일	CORPORATION TRUST CENTER 1209 ORANGE ST, WILMINGTON, New Castle, DE, 19801	John Fuller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내용

귀하는 아래 표에 따라 가맹사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The Coffee Bean & Tea Leaf®	명칭은 브랜드의 원래 소유자/크리에이터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대중에게 판매하는 주요 제품이기도 합니다.
상 호	The Coffee Bean & Tea Leaf ** branch	가맹점사업자 운영 매장 이름
상표 (서비스표)	The Coffee Bean & Tea Leaf 로고 (class 30) 외 7개. 상세 정보는 본 정보공개서 1.9 항 참조	1.상표 등록번호: 40-0438428 2.상표 등록번호: 41-0079646 3.상표 등록번호: 40-0531772 4.상표 등록번호: 41-0079645 5.상표 등록번호: 40-0879259 6.상표 등록번호: 40-0892478 7.상표 등록번호: 41-0227626

		8.상표 등록번호: 45-0026213 9.상표 등록번호: 40-1221641 10. 상표 등록번호: 40-1221640 11. 상표 등록번호: 41-0396242 12. 상표 등록번호: 40-1511194 13. 상표 등록번호: 40-1486152 14. 상표 등록번호 IR 1717997 15. 상표 등록번호: IR 1717998 16. 상표 등록번호: IR 1717999
광 고	위 내용 참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미화 달러, 부가세 제외)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349,179,993	5,035,296	344,144,697	20,837,352	17,003,047	17,403,045
2022	366,703,841	4,405,922	362,297,918	29,065,525	15,740,399	16,728,636
2023	386,971,062	4,910,463	382,060,599	30,517,720	19,863,447	19,762,681

그 근거 자료는 별지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매출액(전세계)

(단위: 미화 달러, 부가세 제외¹⁾)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¹ 이 금액은 전세계 수입입니다.

당사의 이사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Tony Tan Caktiong

Caktiong 은 2015년 10월부터 SJBF, LLC 의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aktiong 은 1978년부터 필리핀 Pasig 시에 있는 Jollibee Foods Corporation 의 이사회 의장직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Richard Chong Woo Shin

Richard Chong Woo Shin 은 JFC 의 최고재무책임자입니다. 2022년 JFC 에 입사하였으며, 이전에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Grobest Group 의 Group CFO 였습니다. 또한 그는 William Grant & Sons; Ralph Lauren; Bacardi-Martini 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FO 였으며, , Altria/Philip Morris International 의 여러 고위직을 역임하였습니다.

Mary Ann Ty Say

Mary Ann 은 2020년 3월부터 The Coffee Bean & Tea Leaf® 브랜드의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Global Chief Financial Officer)를 역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홍콩 디즈니랜드의 수익관리 및 분석 담당 이사(Director)였으며,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Mary Ann 은 Phillip Morris Fortunate Tobacco Corporation 의 Controller 겸 사업개발 책임자(Head of Business Development)였습니다.

Frank Sheng

Frank Sheng 은 2018년 6월부터 필리핀 Pasig City 에 있는 Jollibee Foods Corporation 의 국제사업부(Internal Audit Head)를 역임하였습니다. JFC 에 입사하기 전에는 Yum! china 의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 부문장이었습니다.

Julie Larochel

Julie Larochel 은 2010년 6월부터 베트남에 있는 Thai Kieu Co Ltd 의 이사로 있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베트남에 본사를 둔 비공개 회사인 Viet Thai International Joint Stock Company 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eil Squires

Neil Squires 는 2022년 1월부터 Vistra Ireland 법인부문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018년 2월부터 Vistra Assurance (Ireland) Limited 의 Managing Director 를 역임하였고, 2002년 5월부터는 2018년 2월 Vistra Group 에 인수될 때까지 Squire Gilbride Chartered Accountants 의 창립 파트너였습니다.

David John France

David John France 는 Julie Larochelle 의 Alternate Director 입니다. 그는 2008년부터 Viet Thai International Joint Stock Company 의 Managing Director 겸 Supply Chain Director 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Joliza Janelle D. Salgado

Joliza Janelle D. Salgad 는 Tony Tan Caktiong 의 Alternate Director 입니다. 그는 2018년 5월부터 Jollibee Foods Corporation 법무실에서 근무하며 본건 브랜드 총괄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Jollibee Foods Corporation 에 입사하기 전 2015년 1월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Picazo, Buyco, Tan, Fider & Santos Law Firm 에서 근무하였습니다.

Julie Fe Del Rosario

Julie Fe Del Rosario 는 Richard Chong Woo Shin 의 Alternate Director 입니다. Del Rosario 는 2016년부터 Jollibee Foods Corporation 의 Global Comptrollership and Tax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Celina Leonardo

Celina Leonardo 는 2020년 4월부터 The Coffee Bean & Tea Leaf® 브랜드의 재무 기획 및 보고 담당 이사입니다. 현재 직책에 앞서, 그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홍콩 디즈니랜드의 F&B 및 상품에 대한 수익 관리 및 애널리틱스(Revenue Management & Analytics) 매니저였습니다. Leonardo 는 2013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Phillip Morris Fortunate Tobacco Corporation 의 재무팀(Finance team)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1년 12월 31일	0	10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최근 3년간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지적재산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또는 가맹본부의 실시기간)
The Coffee Bean & Tea Leaf 로고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출원: 1998.3.18 등록: 1999.1.19.	출원 40-1998-0007425 등록 40-0438428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29.1.19.
The Coffee Bean & Tea Leaf 로고	 Cl. 42: 식품 및 음료 제공 시설에서 사용	출원: 2000.11.30 등록: 2002.9.25	출원 41-2000-003067 등록 41-0079646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2.9.25
The Coffee Bean 및 로고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출원: 2000.11.30 등록: 2002.	출원 40-2000-0055603	Super Magnificent Coffee	2032.10.7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또는 가맹본부의 실시기간)
		10.7.	등록 400531772	Company Ireland Limited	
The Coffee Bean 및 로고	 Cl. 42: 식품 및 음료 제공 시설에서 사용	출원: 2000.11.30 등록: 2002 9.25	출원 41-2000-30365 등록 41-0079645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2.9.25
The Coffee Bean & Tea Leaf (한글)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Cl. 42: 식품 및 음료 제공 시설에서 사용	출원 2008.4.15 등록 2009.1.23	출원 45-2008- 0001643 등록 45-0026213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29.1.23
CBTL (Stylized)	 Cl. 21: 음료용품 및 비전기 커피 및 티 브루어에 사용	출원 2009. 12. 2 등록 27 April 2010	출원 40-2009- 0006438 등록 40-0821291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0. 4.27
CBTL (Heritage Logo)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출원 2009. 12. 2 등록 27 April 2010	출원 40-2009- 0006440 등록 40-0821292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0. 4.27
CBTL (Heritage Logo (color))	 Cl. 43: 식음료 제공업소에서 사용	출원 2009. 12. 2 등록	출원 41-2009- 0002743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2030.6.3.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또는 가맹본부의 실시기간)
		2010.6.3.	등록 41-0197573	Ireland Limited	
CBTL COFFEE BERRY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4 M 출원 ay 2009 Date of registration: 6 April 2011	출원 40-2009- 0020400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1.4.6.
			등록 400859874		
CBTL COFFEE BERRY (color)	 Cl. 43: 식음료 제공업소에서 사용	출원 4 May 2009 Date of registration: 20 July 2010	출원 41-2009- 0009447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0.7.30.
			등록 41-0199206		
TEA & COFFEE SHOP (CBTL Heritage Logo) (color)	 Cl. 21: 음료용품 및 비전기 커피 및 티 브루어에 사용	출원 2 December 2009 Date of registration: 3 June 2010	출원 40-2009- 0006439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0.6.3.
			등록 40-0825033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또는 가맹본부의 실시기간)
TEA & COFFEE SHOP (CBTL Heritage Logo) (color)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출원 2 December 2009 Date of registration: 3 June 2010	출원 40-2009- 0006441 등록 40- 0825034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0.6.3.
TEA & COFFEE SHOP (CBTL Heritage Logo) (color)	 Cl. 43: 식음료 제공업소에서 사용	출원 2 December 2009 Date of registration: 3 June 2010	출원 41-2009- 0002744 -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0.6.3
CBTL 로고	 Cl. 11. 전기 커피/차 머신에 사용	출원 2010.6.29 등록 2011.9.5	출원 40-2010- 0033601 등록 40-0879259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1.9.5
CBTL 로고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출원 2010.6.25 등록 2011.12.1	출원 40-2010- 00033602 등록 40-0892478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1.12.1
CBTL 로고		출원	출원	Super	2032.3.2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또는 가맹본부의 실시기간)
	Cl. 35: 소매, 온라인 소매 및 우편 주문 서비스에 사용	6.25.2010 등록 2012.3.2	41-2010- 0016202 등록 41-0227626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The Coffee Bean (Stylized)	 Cl.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Cl.32:	출원 2015.7.1. 등록 2016.12.15.	등록 40-1221640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26.12.15.
The Coffee Bean (stylized)	 C1 29: 우유를 포함한 향이 있는 쉐이크 제품에 사용 C1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C1 32: 과일을 베이스로 한 셰이크, 바닐라 및 카라멜을 포함한 향이 있는 셰이크에 사용	출원 2015.7.1. 등록 2016.12.15.	출원 40-2015- 0052110 등록 40-1221641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26.12.15.
The Coffee Bean (stylized)	 Cl. 35: 소매업에 사용	출원 2015.7.14. 등록 2017.5.4..	출원 41- 20115-0033363 등록 41- 0396242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27. 5. 4.
THE COFFEE BEAN & TEA LEAF EST. 1963 & Design (Hero Logo)	 Cl. 29: 우유를 포함한 향이 있는 쉐이크 제품 또는 과일 베이스의 제품에 사용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Cl. 35: 소매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 사용 Cl. 43: 식음료를 제공하는 매장에서	출원 2018.4.6. 등록 2019.8.19.	출원 40-2018- 0046473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29.8.19.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또는 가맹본부의 실시기간)
	사용		등록 40- 1511194		
Bean & Leaf Design (Simplified Logo)	 Cl. 29: 우유를 포함한 향이 있는 쉐이크 제품 또는 과일 베이스의 제품에 사용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Cl. 35: 소매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 사용 Cl. 43: 식음료를 제공하는 매장에서 사용	출원 2018.4.6. 등록 2019.6.5.	출원40-2018- 0046474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29.6.5.
			등록 40- 1486152		
Bean & Leaf Design (Simplified Logo)	 Cl. 11: 전기 커피와 차 양조장에 사용 Cl. 21: 음료용품 및 비전기 커피 및 티 브루어에 사용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Cl. 35: 소매 및 온라인 소매 서비스에서 사용 Cl. 43: 식음료 제공업소에서 사용	출원 23 December 2022	출원 1717997 (Extens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2.12.23.
			등록 TBD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또는 가맹본부의 실시기간)
THE COFFEE BEAN & TEA LEAF & Design (Stacked Logo)	 THE COFFEE BEAN & TEA LEAF Cl. 11: 전기 커피와 차 양조장에 사용 Cl. 21: 음료용품 및 비전기 커피 및 티 브루어에 사용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Cl. 35: 소매 및 온라인 소매 서비스에서 사용 Cl. 43: 식음료 제공업소에서 사용	출원 23 December 2022	출원 1717998 (Extens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등록 TBD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2.12.23.
THE COFFEE BEAN & TEA LEAF EST. 1963 & Design (Hero Logo)	 Cl. 11: 전기 커피와 차 양조장에 사용 Cl. 21: 음료용품 및 비전기 커피 및 티 브루어에 사용 Cl. 30: 커피, 차, 코코아 제품에 사용 Cl. 35: 소매 및 온라인 소매 서비스에서 사용 Cl. 43: 식음료 제공업소에서 사용	출원 23 December 2022	출원 171999 (Extens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등록 TBD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2032.12.23.

- * 귀하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The Coffee Bean & Tea Leaf 브랜드 가맹사업은 한국에서 2001년 3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 가맹사업 연혁

한국에서 CBTL Franchising 은 Coffee Bean & Tea Leaf 의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글로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CBTL Franchising 의 특수관계인인 SMCC 가 현재 한국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CBTL Franchising, LLC	The Coffee Bean & Tea Leaf®	John Fuller	2001.3.23. ~2019.10.1. (다만, 한국의 경우 2022.1.11)*	1945 S. La Cienega Boulevard, Los Angeles, CA 90034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The Coffee Bean & Tea Leaf®	Neil Squires	2019.10.1. (다만, 한국의 경우 2022.1.11.)* ~ 현재	Unit 14, Gray Office Park, Galway Retail Park, Headford Road, Galway, Ireland

* 2019년 10월 1일 SMCC 는 ICT 및 CBTL 과 양도계약(Assignment and Assump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서 ICT 는 ICT 의 모든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 자격 및 이익을 SMCC 에 양도하였고, ICT 와 CBTL Franchising 은 ICT 와 CBTL Franchising 이 당사자인 특정 가맹 계약 및 재가맹계약들에 관한 권리, 자격 및 이익을 SMCC 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MCC 는 2019년부터 전세계적으로 "The Coffee Bean & Tea Leaf" 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CBTL 이 일정한 이행 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 등록된 가맹본부 자격을 유지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현재는 SMCC 가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3. 업종

영업표지	업종	
The Coffee Bean & Tea Leaf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커피	커피 및 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전 세계]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1048	756	292	1071	753	318	1164	788	376

[국내]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점수	전체	가맹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79	279	279	238	238	0	229	229	0
서울	197	197	197	168	168	0	162	162	0
부산	8	8	8	8	8	0	7	7	0
대구	1	1	1	1	1	0	1	1	0
인천	9	9	9	9	9	0	7	7	0
광주	3	3	3	3	3	0	3	3	0
대전	1	1	1	1	1	0	1	1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1	1	1	0	0	0	0	0	0
경기	51	51	51	42	42	0	42	42	0
강원	1	1	1	1	1	0	1	1	0
충북	2	2	2	1	1	0	1	1	0
충남	0	0	0	1	1	0	1	1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2	2	2	0	0	0	0	0	0
경남	3	3	3	2	2	0	2	2	0
제주	0	0	0	1	1	0	1	1	0

* CBTL Franchising LLC 는 Coffee Bean Korea, Co. Ltd.와 한국 내 The Coffee Bean & Tea Leaf 의 브랜드 사용 가맹점 운영 관련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SMCC 는 CBTL Franchising LLC 로부터 모든 권리를 인수받았습니다. Coffee Bean Korea, Co. Ltd.는 국내에서 22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전세계]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799	28	62	-	-	756
2022	756	67	70	0	0	753
2023	753	73	38	0	0	788

[국내]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79	9	30	-	-	258
2022	258	0	20	0	0	238
2023	238	0	9	0	0	229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The Coffee Bean & Tea Leaf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개)

구분	영업표지/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의 수		
					2019.12.31..	2020.12.31	2021.12.31
해당 없음							

※ 한국 외 당사 특수관계인의 현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SMCC는 (주)커피빈코리아의 협조를 얻어 각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파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분기 이후 (주)커피빈코리아가 SMCC에 매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SMCC로서는 정보 제공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바 결국 연간 평균 매출액 현황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한국 외 지역의 매출액 파악은 어렵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회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한국 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2	229	4,006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

The Coffee Bean & Tea Leaf는 1개의 가맹점사업자가 한국에 있는 모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회사와 가맹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2	788	3,16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1. 가맹금 예치 기관

해당 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The Coffee Bean & Tea Leaf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판대(Kiosk)의 경우]	가맹본부	최초 가맹금이 면제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요구된다면, (i)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치되거나, (ii)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지급이 진행됩니다.	가맹점 및 가판대 면제(미화 5,000)
보증금	없음	없음	없음
기타 비용	아래 참고	없음	없음

1) 최초 가맹금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미화 달러, 부가세 제외)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가맹점 및 가판대 면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 부터 2개월 경과시 가맹본부가 지급을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법에 따른 정 보공개서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로 서 가맹희망자 또	없음	현재 가맹점사업자에 한하여 최초 가맹금이 면제됨. 미래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최초 가맹금은 매장마다 대략 \$6,250~ \$25,000

		요청할 수 있음(다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정하는 경우		사이에서 책정될 수 있고, 가판대(Kiosk)의 경우에도 \$5,000로 책정될 수 있으나, 현재는 면제됨)
--	--	--------------------------------	---	--	--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없음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세부항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미화 달러,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 m' 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필수설비 (정착물)	가맹본부 또는 공급자	정착물은 대략 \$33,940.00	대략 \$535*	송장 수령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설치 후 환불 불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가맹본부 또는 공급자	약 \$116,060.00	대략 \$1,832*	송장 수령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설치 후 환불 불가	
최초 물품 공급 비용	가맹본부 또는 공급자	약 \$50,000	-	물품 공급 하루 전	물품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총계		약 \$200,000.00	-			

*가맹점 매출산정 근거자료로 제출한 것과 같이, 가맹점은 총 265개이며, 평균 면적은 약 215.8㎡로 계산됨.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는 부지를 임차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대한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거부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동의를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스스로의 독립적인 조사에 따라 가맹점 부지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 및 그 직원의 선정 및 교육·훈련 기준

당사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교육·훈련 자격 및 직원 채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서 체결 기준 충족 시 교육 자격 획득	- 한국 거주 - 충분한 자본 확보/ ‘멀티유닛’ (multi-unit) 성장 지원 능력 - 부정부패방지법 준수 및 신원조사 통과
직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The Coffee Bean & Tea Leaf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양에 따라 모든 장비를 자체적으로 공급합니다(즉, 가맹점사업자는 Ditting KE640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영업 중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한 2021 년 평균 금액(이하 “차액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2021 년 기준)	내용 ^②
가맹점별 평균 차이액가맹금 ^③	차액가맹금 없음
가맹점별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이액가맹금 부담 비율 ^④	차액가맹금 없음

1) 비용 부담

귀하는 영업 개시 이후에도 다음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 로열티	가맹본부	회계기간 내 가맹점 총 수익 x 가맹계약서 상 명시된 로열티 비율*	매 회계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없음	없음	*로열티 비율은 2020. 12. 31.까지는 3.75%. 2021. 1. 1. 이후에는 가맹점사업자가 한국 내에서 최소 300개 이상의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3.75%.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특정 회계기간 동안 한국에서 300개 미만의 점포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간 동안의 로열티 비율은 4%가 됨.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맹계약에 기재된 최소 로열티(최저보장 정기납입비)에 미달하여서는 안됨.
영업지역 보증금	가맹본부	\$125,000.00 (ADA 4.3)	개발합의동의서의 실행 이후	없음	가맹본부에 완전히 귀속	가맹사업자가 지역 부담금이 아닌 ‘초기 개발 부담금’ (ADA 4.2)를 지불함. 개발 부담금은 가맹사업자의 최초 가맹금으로 입금됨.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매장 운영 상태를 점검할 것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검 대상	세부사항	빈도	비고
회계	회계 감사 재정 보고서	1년에 한 번	
가맹사업자 점검		4분기에 한 번 (1년에 4번)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비용이 없는 경우에도 명시 필요)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부담

해당 없음.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가맹점의 매장이동이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의 매장 이동을 비합리적으로 제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장 이동에 대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a)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상 권리를 합의 또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양도, 이전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상 조건 및 가맹본부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동의한 제3자 누구에게나 의무이행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와 같은 의무이행 승계 이후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b)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의무

가맹점사업자는 지적재산권의 지속기간 동안 또는 종료일 전까지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의 연관이 있는 모든 상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간판, 간판 캐비닛, 마케팅 용품 등 가맹본부 관련 모든 용품들을 가맹본부에 반납하거나, 가맹본부가 법적 책임 없이 이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표장 사용과 관련하여, 임시 명칭 기타 유사한 등록을 모두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매장의 내관과 외관을 변형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특정 표장이 포함된 모든 재료 및 용품을 케이스 또는 포장 형태로 당사에 반납하고, 나머지 재료 및 용품을 계약 만료 30일 후까지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전화회사 및 인명록 출판사에게 표장과 관련된 전화번호 또는 인명록 명부를 사용할 권리가 중지되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모든 의무이행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없음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는 귀하가 직·간접적으로 수령한 양도 대가 총액의 5%를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본 금액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당사의 변호사 비용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후의 조치사항

계약 만료 시 가맹점사업자는 상호, 간판 등 business mark 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기밀정보의 사용을 중지하고, 가맹본부가 대여한 모든 매뉴얼과 기밀 정보를 반납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로열티 및 당사로부터 구매 관련 미납 대금 및 이자, 기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계약 만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 특정 제한 조건들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당사와의 가맹계약 체결 이전 아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Coffee Bean & Tea Leaf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지 2에 기재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The Coffee Bean & Tea Leaf 가맹사업 개시 또는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서비스, 설비, 상품, 원부자재 등의 매입 또는 임차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아니합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The Coffee Bean & Tea Leaf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The Coffee Bean & Tea Leaf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제한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용역의 통일성을 위해 오로지 당사의 승인을 받은 제품과 용역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 용역	제한 내용/ 요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승인된 제품(Authorized Products)”: 특정 에스프레소 음료와 커피, 볶은 커피콩과 블렌드, 프리미엄 차, 카라멜, 제과제빵, 스낵 등 식품 및 커피 제조기, 컵, 모자, 티셔츠, 아이디어 상품 등 부수적인 상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승인한 품목만 판매 가능. 당사는 향후 승인품목 변경, 추가 가능. 귀하는 당사가 요구하는 모든 승인 제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는 귀하가 모든 승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할 의무가 없음.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의무불이행을 고지한 날로부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불이행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함. 동 기간 내에, 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기간이나 가맹본부가 서면고지 시 명시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및 그에 따른 권리는 추가 고지 없이 자동 해지됨. 2) 더불어, 가맹점사업자가 12개월 이내 이미 세 번 이상의 중대한 의무불이행 관련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과 같은 의무불이행은 추가 고지 및 시정기회 없이 자동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전매품(Proprietary Products)”: 특정 전매 커피, 차, 커피 추출물, 파우더 믹스 등의 재료 및 원재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자로부터만 전매품을 구매할 수 있음.	1)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의무불이행을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불이행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함. 동 기간 내에, 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기간이나 가맹본부가 서면고지 시 명시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및 그에 따른 권리는 추가 고지 없이 자동 해지됨. 2) 더불어, 가맹점사업자가 12개월 이내 이미 세 번 이상의 중대한 의무불이행 관련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과 같은 의무불이행은 추가 고지 및 시정기회 없이 자동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비전매 상품(Non-	가맹점사업자는	1)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상품, 용역	제한 내용/ 요건	위반 시 책임	비고
Proprietary Products): 기구 가구, 설비, 제복, 지급품, 용역, 메뉴, 포장, 양식, 소프트웨어, 모델, 주변기기 및 승인된 제품이나 전매품이 아닌 가맹사업자가 사용, 제공, 판매할 만한 상품	가맹본부로부터 비전매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비전매 상품만을 가맹본부나 당사가 지정한 공급자, 제조자, 생산자, 용역 제공자로부터 구매, 확보하여 사용, 제공, 판매할 수 있음.	의무불이행을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불이행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함. 동 기간 내에, 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기간이나 가맹본부가 서면고지 시 명시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및 그에 따른 권리는 추가 고지 없이 자동 해지됨. 2) 더불어, 가맹점사업자가 12개월 이내 이미 세 번 이상의 중대한 의무불이행 관련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과 같은 의무불이행은 추가 고지 및 시정기회 없이 자동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귀하는 상기 나열되지 않은 상품, 용역 판매를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해서 당사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회사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따라 상기 표에 다른 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 용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사가 지정한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소비자)	상품/ 용역	제한/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재판매용 승인된 제품 (Authorized Products for resale)을 구매하는 개인이나 사업체	승인된 제품	가맹점사업자는 소매고객에게만 승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승인 제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모든 개인이나	1)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의무불이행을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불이행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함. 동 기간 내에, 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기간이나 가맹본부가 서면고지 시 명시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 및 그에 따른 권리는 추가	

		사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됨	고지 없이 자동 해지됨. 2) 더불어, 가맹점사업자가 12개월 이내 이미 세 번 이상의 중대한 의무불이행 관련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전과 같은 의무불이행은 추가 고지 및 시정기회 없이 자동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	-------------------	---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지정하지 않은 공급처로부터 상기 상품의 조달을 희망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회사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따라 상기 표에 다른 거래상대방 (소비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해당 없음.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2.5(b)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정된 구역에서 특매 매장 (Special Distribution Store)을 개설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사
Coffee Bean & Tea Leaf 특산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 볶은 커피콩과 블렌드, 프리미엄 차, 제과제빵, 스낵 등 식료품과 보조적 상품을	SMCC	없음

제공하는 매장		
---------	--	--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가맹계약에 따라 해당 점포 반경 0.25 mile (약 0.4km)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해당 없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 외에서 The Coffee Bean & Tea Leaf products 를 판매하거나 The Coffee Bean & Tea Leaf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당사는 SMCC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가맹본부, 계열사, 라이선스 소지자는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개편에 따른 당시 커피하우스 (Coffeehouse)의 운영과 확장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특배 매장 (Special Distribution Store)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동일 업종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제3자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특배 매장을 개설 및 운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제3자 라이선스 제공과 별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먼저 제공한 후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특배 매장을 개장,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해당 없음. 가맹본부인 SMCC 는 가맹점사업자인 (주)커피빈코리아로부터 로열티만을 수취하며, 국내에서 어떠한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1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해당 없음. 가맹본부인 SMCC 는 가맹사업자인 (주)커피빈코리아로부터 로열티만을 수취하며, 국내에서 어떠한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1	0%	0%

6. 가맹계약의 기간 및 가맹계약 기간의 연장, 갱신, 해지 또는 변경

1) 계약기간 및 연장기간

The Coffee Bean & Tea Leaf 가맹계약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귀하는 4번 귀하의 가맹사업권을 갱신하여 갱신일로부터 5년의 추가 기간 동안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기본 서식 변경에 따라 갱신기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상 계약 갱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3 연장 계약기간. 개발자는 본 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본 제2.3항에 포함된 조건의 적용을 받아 당시 현행 프랜차이즈 계약 서식에 따라 5년 기간(“1차 연장 계약기간”)에 대해 새로운 프랜차이즈 계약(“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연장 권리”)를 갖는다. 이 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은 마찬가지로 개발자에게 5년 기간(“2차 연장 계약기간”)에 대해 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은 마찬가지로 개발자에게 5년 기간(“3차 연장 계약기간”)에 대해 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은 마찬가지로 개발자에게 5년 기간(“4차 연장 계약기간”)에 대해 추가로 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각각의 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자부터 계약기간이 기산된다. 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이 작성되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보장 정기납입경비와 정기납입경비는 제1.2항에 규정된 금액(최저보장 정기납입경비의 경우 최초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적용되고 있던 조정 금액)으로 정해지며 각각의 프랜차이즈 연장 계약은 위에서 부여된 연장 권리에 부합하도록 개정된다.

2)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계약상 갱신과 별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최초계약의 체결 시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기한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는가? [예 → (2), 아니오 → (7)]	D- 180 ~ 90
(2) 갱신거절사유(iii)가 본 사안에 적용되는가? [예 → (4), 아니오 → (3)]	D- 180 ~ 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 → (5), 아니오 → (A)]	D- 180 ~ 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A)]	(1)+ 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C), 아니오 → (6)]	D- 180 ~ 90
(6)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 → (B), 아니오 → (D)]	--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80 ~ 90

절차	기한
[예 → (B), 아니오 → (8)]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 (E), 아니오 → (A)]	D- 60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본부는 아래 사유로 가맹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	가맹계약의 해당 조항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를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면허, 허가를 가맹사업자가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양질의 상품과 용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과정 또는 영업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SMCC 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적 재산권 보호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사업법 시행령 14조
정규 교육과 훈련과정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같은 업종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사업법 시행령 14조

비용에 비해 명백히 높은 경우는 예외)	
-----------------------	--

4)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사유 및 그 절차

가맹본부는 아래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사유	관련 조항
통지 없이 자동 해지: (i) 개발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불능 판정을 받은 경우(관련 연방 혹은 주 법률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시인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ii) \$25,000를 초과하는 확정 채무를 30일 이상 변제하지 못한 경우(보증공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iii) 라이선스 매장, 입점건물 혹은 개발자의 자산이 정부 공무원의 공무 수행에 의해 압류, 차압 혹은 몰수된 경우 혹은 개발자가 확정 채무를 30일 이상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 혹은 담보권자에 의해 압류, 차압 혹은 몰수된 경우(보증공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iv)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 혹은 라이선스 매장에서 사용되는 동산에 압류가 설정되고 그러한 압류가 5일 이내에 해제되지 않은 경우, (v) 개발자가 라이선스 매장 혹은 기기에 유치권 설정을 허용한 경우, (vi) 라이선스 매장의 운영으로부터 기인하여 혹은 그와 관련하여 회사 혹은 그 자회사 혹은 계열사에 대한 확정 판결을 허용 혹은 허락한 경우, (vii) 강제수용 혹은 강제수용을 대신한 이전이 실시된 경우.	가맹계약 제11.2조
통지 없이 해지권리가 주어지는 경우: (a) 사업 중단; (b) 양도, 사망, 행위능력 상실; (c) 반복적 불이행; (d) 허위진술; (e) 법률위반; (f) 보건 또는 안전 규정 위반; (g) 과소 보고, (h) 형사범죄 반복; (i) 동의 없는 양도; (j) 지적재산권 오용	가맹계약 제11.3조
통보와 치유기회가 있는 해지: 상기 나열된 의무불이행 또는 가맹계약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서면 의무불이행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 연루된 경우 5일 이내에) 의무 불이행을 시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함. 동 기간 내, 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과 이에 따른 모든 권리는 추가 통보나 시정기회 없이 자동 해지	가맹계약 제11.4조
기타 해지 사유: (a) 교육 이수 위반, (b) 점포 개설 위반	가맹계약 제12.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어도 두 번 이상 위반에 대한 세부사항과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당사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당사의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맹계약에 명시된 아래 사유가 발생할 시 가맹본부는 두 번의 통지나 두 달 이상의 시정기간 없이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사유	가맹계약의 해당 조항
가맹점사업자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1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되는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2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4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6호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함.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7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8호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9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조 10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통보 여부 및 동의절차

당사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가맹계약의 조건을 수정할 수 없으나,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가능 준거법이나 관할법이 가맹계약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사전 해지통보나 갱신불가통보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가맹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본 법규에 의해 가맹계약의 조문이 무효로 간주되거나 집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자유재량으로 해당 조항을 유효하고 시행가능 하도록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제15.2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권을 환매하고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기 전까지 당사가 가맹점을 일시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가맹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 아닌 가맹계약의 해지나 종료의 경우	가맹본부나 그 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자산의 매수대금은 (i) 채고를 제외한 가맹점 자산의 순 장부가치와 (ii) 채고의 당시 도매 시장가치와 비용 중 적은 액수를 합한 금액임 → 매수대금은 매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 (귀하가 당사의 통지를 받을 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체에게 양도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제안된 양수인과 그 소유자는 품성이 좋아야 하고, 가맹계약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사업경험, 능력, 재원 등을 포함 개발자의 기준 및 자격에 부합하여야	가맹점사업자가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인으로부터 선의의 (bona	

하며, 가맹본부가 승인한 서면 인수계약에 명시된 가맹점사업자 및 소유자의 의무를 승계함. 단, 본 양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거나; 가맹본부의 선택에 따라 그 당시에 유효한 양식에 대한 대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리고 대체 가맹계약 하에 양도인은 가맹본부와 계열사들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이행할 것임을 무기한 보증해야 함) - 가맹점사업자는 지역개발계약에 따라 서명한 모든 가맹계약들을 동일한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해야 함.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맺은 모든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계약상 의무불이행은 없어야 함. - 양수인은 계약 전 12개월 이내에 자신의 커피빈 매장(Coffee Bean Store)을 가맹본부의 당시 건물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색채 배합, 외관과 어울리게 재단장할 것에 동의해야 함. (본 재단장은 현존하는 개조 및 구조 변형, 리모델링, 재장식 등을 포함) - 가맹점사업자와 소유자는 가맹본부가 원하는 형식으로 당사와 당사의 소유자, 매니저, 임직원, 대리인에 대한 소송 및 청구사항을 공개해야 함. - 가맹점 사업자는 직간접적으로 수령한 양도대가 총액의 5%를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함. 단, 이것은 양도가 야기한 당사의 변호사 비용 이상이어야 함. - 가맹점사업자는 양도 관련 중대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 가맹본부는 지불금과 조건이 가맹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권리가 있음. -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의 소유자는 예정된 양수인에게 있어서 ‘매수 할부대금 및 이자 포함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보다 ‘가맹본부 및 그 계열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가 우선임을 합의 필요. - 가맹점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송, 조치, 계류된 법적 절차가 없어야 함. - 양수인과 그 인증 교육 담당 매니저, 총 매니저 또는 매장 운영을 담당하는 기타 직원들은 가맹본부의 최초 교육과정을 완수해야 함.	fide) 서면 제안을 확보해야 함. → 가맹본부는 한국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도 대상으로 제안된 지분을 동일 가격 및 동일 조건으로 귀하로부터 매수할 권리를 가짐. (본 권리는 상기 제안서의 사본 수령시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음) → 가맹본부가 당해 제안서 사본 수령시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귀하 및 그 소유자들은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제안서 상 조건에 따라 양도를 이행할 수 있음.	
--	--	--

3) 가맹사업운영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해당사항 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및 가맹본부의 감독

1) 경쟁제한의 범위

가맹계약 기간 동안 귀하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The Coffee Bean & Tea Leaf 와 동종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i)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며 (ii) 계약체결 시 이미 운영하고 있던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종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맹사업자와 그들의 직간접 소유자, 계열사, 자회사, 임원, 소유자 등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한, 가맹계약의 해지, 종료, 비갱신, 또는 양도 이후 24개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현존하는 커피빈 매장 (Coffee Bean Store)의 10마일 반경 내에 경쟁사업을 허가, 소유,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한된 사업	승인 절차	비고
커피빈 도소매사업을 운영, 도소매사업 운영 허가 제공, 또는 특산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 볶은 커피콩과 블렌드, 프리미엄 차, 제과제빵, 스낵 등의 식료품과, 커피 제조 장비, 컵, 모자, 티셔츠 등의 부수적 상품 및 다른 특별 재료 생산, 또는 커피빈 제품과 유사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단, (i) 가맹점사업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며, (ii) 계약체결 시 이미 운영 중이었던 사업은 예외	가맹점사업자가 경쟁사업 운영 관련 서면동의 요청 제출 → 가맹본부 검토 → 결정 →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 제한

당사는 The Coffee Bean & Tea Leaf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을 제한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	비고
일일 12시간 이상	당사 매뉴얼 상 지정된 연방 휴일을 제외하고 주당 7일	

다만,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을 연속 7일 이상 정지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본부가 각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이나 쇼핑센터 임대인이 정한 운영시간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영업시간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영업시간 단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귀하는 모든 계약기간에 걸쳐 인증 교육 담당매니저 1인과 각 매장의 경우 당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총 매니저 1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총 매니저, 또는 보조 매니저를 고용하여 시스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맹점 운영 전 기간 동안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지정 대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 및 모든 시스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점 언제라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다음 사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a) 매장 구내 검사
- (b)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속기간 또는 비정기적인 기간 중 매장의 운영상태 관찰, 촬영 및 비디오테이프 녹화
- (c) 시험 및 분석을 위하여 승인된 제품, 자재 또는 용품에 대한 샘플 반출
- (d) 매장 직원 인터뷰
- (e) 매장 고객 인터뷰
- (f) 매장 운영과 관련된 장부, 기록 및 문서 (전자문서 및 인쇄문서 모두 포함) 점검 및 복사

9. 광고 및 판촉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비용분담기준

가맹본부는 광고 및 판촉활동 관련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영업판촉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매월 총 매출의 일정 비율을 현지 마케팅, 광고 및 관련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사업에 대한 모든 광고비를 부담합니다. 모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정한 연간 광고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인 광고, 판촉활동

각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사항

영업비밀은 모든 상품명, 상표, 서비스표, 트레이드 드레스, 마케팅 기법, 제조 기법, 영업 방식 및 유용한 기술 또는 관리 절차를 포함하여 독자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공유한 영업비밀 정보는 영업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교육, 훈련 및 세미나 자료 등 가맹점 운영 관련 영업비밀을 기재한 문서는 당사의 승인 없이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승인 없이 당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공개할 경우 가맹본부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및 그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1호에 의거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12.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자회사, 계열사 및 각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변호인 개입시 적용가능 범위 내에서 포함)와 가맹점사업자 (가맹점사업자 소유주, 보증인, 임직원, 대리인 및 변호인 개입 시 적용가능 범위 내에서 포함) 간 가맹계약 기타 다른 모든 계약으로 인하여 야기된 상충 또는 청구는 가맹계약 제15.9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미국 중재협회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 제기하게 됩니다. 중재인은 가맹계약 15.8조에 따라 금전적 손해배상, 행위의 금지 및 예방,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을 포함하여 중재인이 정황상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보상 및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중재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 상담, 협의 개시일부터 영업 시작까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절차와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단계	상세 내용	기한	소요비용 추정액
총 기간		45일 이내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부분 참조
가맹희망 사업자 질의	- 전화상담 신청 - 희망 지역 확인, 담당자 지정	D-45	
사업 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매장 현황 관련 서류 제공 - 희망 가맹점사업자와 상담, 협의	D-44~43	
매장 개발 및 지역 리서치	- 위치 선정 - 인근 매장 관련 정보 제공	필요 시	
최종 협상	- 개장 승인 - 계약서 제공	D-42~4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7	
가입비 지급	- 가입비 지급(Kiosk 의 경우)	D-26 (1일)	
매장 조사/디자인	- 투자비용 계산	D-26~24 (3일)	
공사 개시	- 디자인 협상 및 공사일정 확정	D-24 (1일)	
인테리어 디자인	- 공사 개시	D-24~5 (20일)	
교육 및 훈련	- 매장 운영 관련 교육 및 훈련	5주 기간 이하, 최초 매장영업 개시 2달 이전	
매장 영업개시	-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	D-day	

상기표에 명시된 기한은 가맹점의 평균 기준이며, 실제 기한은 협상진행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사업체결 과정에 있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와 무관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당사 정보공개서 관련 자문을 구할 경우 귀하의 정보공개서 검토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될 수 있으며, 당사는 본 정보공개서로부터 7일 경과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절차

당사자간 가맹계약 관련, 또는 기타 다른 계약 및 가맹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야기된 여하한 상충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미국중재협회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 제기하게 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본부는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지 않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해당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가맹본부는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용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가맹본부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주요 교육·훈련 내용

가맹본부는 Coffee Bean & Tea Leaf 점포 운영 관련 각종 지식 및 노하우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상세내용	방식	기간	비고
최초교육: 운영 감독자, 인증교육 매니저 및 최초 매장 총괄 매니저	매장 운영 및 관리 (매장 운영, 영업, 마케팅 기술 및 지침, 부지선택기준, 임대차 협상 지침 관리 및 재무 지침, PR, 매장 운영 모니터링 포함)	가맹본부의 임원진 또는 경영층이 승인한 개인이 가맹본부 사무실, 캘리포니아 남부/싱가포르/말레이시아 소재 가맹본부 소유 또는 계열사 매장,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	매장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 2달 이전 5주 기간 동안 훈련 실시	필수
최초 교육	가맹본부 시스템 및 컨셉과 총체적 매장운영 관련 (마케팅, 장비, 시설점검/유지, 리더쉽, 재무보고 및 인력관리 포함)	가맹본부 임원진 또는 임원진이 승인한 개인이 가맹본부 사무실, 캘리포니아 남부/싱가포르/말레이시아 소재 가맹본부 소유 또는 계열사 매장,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	매장 영업개시일 이전	필수
현장 지원	매장 운영시 추가적인 교육 및 지원	가맹본부의 임원진 또는 임원진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 실시	첫 매장 영업개시일 또는 그 이전에 2주 동안	
지속적 조언	매장 운영시 추가적인 교육 및 지원	가맹본부의 임원진 또는 임원진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 실시	1년마다 1주일씩	
이후 지속적 교육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 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보충 훈련 프로그램			

2. 교육·훈련 관련 최소 소요 시간 및 비용

Coffee Bean & Tea Leaf 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최소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최소 소요 시간	비용 (단위: USD 1.00)	비고
운영 감독자, 인증교육 매니저 및 최초 매장 총괄 매니저 최초교육	15일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 \$12,000 - \$25,000	최초 매장 영업개시 이전 수료 완료
소유주 및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하고 가맹본부가 수락한 1인 최초교육	5 일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 \$12,000 - \$25,000	최초 매장 영업개시 이전 수료 완료
현장 지원 – 훈련/운영 스태프 중 2명	14 일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 \$12,000 - \$25,000	최초 매장 영업개시 이전 수료 완료
현장 지원 – 훈련/운영 스태프 중 1명	7 일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 \$12,000 - \$25,000	2차 또는 3차 매장 영업개시일 또는 그 이전
현장 지원 – 훈련/운영 스태프 중 1명	7 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별도 기간)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4차 매장 영업개시일 또는 그 이전
지속적 교육 – 전 직원	7 일 이상 기간 동안 인증 교육 담당 매니저 또는 총괄 매니저가 실시	가맹점사업자 부담비용	직원 채용시
지속적 교육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가맹본부는 보충/추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당시 합리적인 교육 요금을	필요 시

종류	최소 소요 시간	비용 (단위: USD 1.00)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지불	

3. 교육 · 훈련 대상

상기 표 참조

4.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

해당사항 없음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인 SMCC는 국내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1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2021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별지 1]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Super Magnificent Coffee Company Ireland Limited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지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